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혼인의 특징과 국제결혼의 제도적 개선 방안

문 흥 안*

차 례

- I. 처음에
- II. 한국남성과 베트남여성간 국제결혼의 특징
 - 1. 국제결혼의 배경
 - 2. 정비되지 않은 국제결혼시스템
- III. 결혼이주여성의 정착에 있어서의 제도적 개선방안
 - 1. 국제결혼의 성립
 - 2. 결혼사증의 발급과 외국인 등록
 - 3. 한국에서의 혼인생활과 국적취득
- VI. 혼인의 단절과 귀환에 따른 법제도적 과제와 개선방안
 - 1. 혼인의 단절
 - 2. 남편의 사망(실종)으로 인한 혼인단절과 간이귀화
 - 3. 이혼과 간이귀화
 - 4. 결혼이주여성의 베트남으로의 귀환
- V. 마무리

*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법학박사

** 2013. 4. 23. “한국과 베트남수교 20주년 기념 국제학술세미나”(베트남 호치민국립인문사회과학대학교) 에서 발표한 논문을 토대로 수정·보완한 것임.

접수일자 : 2013. 4. 30 / 심사일자 : 2013. 5. 30 / 게재확정일자 : 2013. 6. 4

I. 처음에

한국과 베트남은 1992. 12. 22. 단절된 국교를 재개한 이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빠른 속도로 교류가 확대되고 있다. 정치적으로 양 국가는 2001년 ‘포괄적 동반자관계’에서 2009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격상하여 더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92년 수교당시 양 국가간 5억 달러에 불과했던 교역액이 2012년 200억 달러로 40배 증가되었고, 한국의 베트남 투자액은 같은 기간 9천만 달러에서 248억 달러로 270배 급증하여 2012년말 현재 한국은 베트남 내 주요 투자국 중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경제적인 교류에 못지않게 인적교류도 매우 활발하다. 국교 재개 당시 소수에 불과했던 한국민의 베트남 방문객수는 2012년 70만명으로 중국에 이어 외국인 방문객수 2위에 올랐으며, 베트남 국민의 한국방문도 매년 10만 여명에 달하고 있고 매년 방문객수가 증가하고 있다.

인적교류에 있어서 특히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이주하는 베트남 여성의 증가가 괄목할만하다. [표-1]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1년 한국남자와 혼인한 결혼이주여성들은 주로 베트남(34.3%), 중국(33.9%), 필리핀(9.3%) 등에서 이주해 오고 있다.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의 혼인건수 중 베트남여성과의 혼인 비중은 2010년을 기점으로 중국을 제치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으로서 한국과 베트남은 중요한 사돈 관계에 있다.

[표-1] 한국남자와 결혼한 외국인 여성의 국적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한국남자+ 외국여자의 결혼	25,105	30,719	29,665	28,580	28,163	25,142	26,274	22,265
중 국	18,489	20,582	14,566	14,484	13,203	11,364	9,623	7,549
베 트 남	2,461	5,822	10,128	6,610	8,282	7,249	9,623	7,636
필 리 핀	947	980	1,117	1,497	1,857	1,643	1,906	2,072
캄 보 디 아	72	157	394	1,804	659	851	1,205	961
일 본	809	883	1,045	1,206	1,162	1,140	1,193	1,124
기 타	564	601	669	749	741	777	2,724	2,923

혼인은 한 인생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일이다. 더군다나 언어와 사회습속이 다른 국가에서 평생의 삶을 유지한다는 것은 출신국가 내에서의 결혼과 차원이 다르다. 물론 한국에 정착한 결혼이주여성 중에는 가정과 사회에 잘 적응하며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혼생활을 이어가는 경우, 혹은 가정을 정리하고 출신국가로 귀환하는 여성도 적지 않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사회통합과 결혼이주여성의 정착지원 차원에서 다문화가족의 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률적·정책적 지원을 정부의 여러 부처가 분담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정책적 지원은 다문화가족의 보호라는 큰 틀 속에서 결혼이주여성을 일반화하여 지원하는 집행하는 체계이다. 모든 결혼이주여성을 동일한 보호의 대상으로 획정하는 저인망식 지원은 그 효과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고비용·저효율 일수밖에 없다.

다문화가족의 출발점은 국제결혼이고, 정책적 지원이나 법률적 시스템의 가동은 국제결혼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이 국내에 정착하는 단계로부터 지원의 손길을 펼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다만 우리 정부는 이례적으로 2010년 2월부터 국제결혼이민관을 베트남에 파견하여 한국 입국 이전에 결혼이민자 교육·상담, 한국어교육 등 현지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국가가 결혼사증의 발급이라는 출입국관리 정책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국제결혼에 관여하고 있지만 이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의 유지·보호라는 측면과 거리가 먼, 목적을 달리하는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을 많이 송출하는 7개 내외의 국가들은 각 나라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포괄하여 혼인의 특징을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결혼이주여성을 송출하는 베트남의 사례를 통하여 국제결혼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법적·정책적 대안을 강구하고자 한다.¹⁾ 한국으로 시집오는 결혼이주여성 중 유독 베트

1) 베트남 이외의 다른 나라들과의 국제결혼에도 베트남에서의 연구결과가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연구는 추후에 진행하고자 한다. 또, 이 논문에서는 악의의 결혼이주여성으로 인한 한국남성의 피해 등에 대한 문제점은 지면관계상 다음 기회로 미루어 두었다.

남여성이 급격히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이혼율이 다른 나라 출신여성들과 달리 꾸준히 급증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원인을 규명해 본다. 아울러 베트남 정부가 영리 국제결혼중개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실 국제결혼중개업체의 활동으로 인한 부작용, 혼인이 파탄된 후 베트남으로 귀환하여 재정착을 준비하는 귀환 여성에 대한 법적인 장애요소를 살펴,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의 법제도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한국남성과 베트남여성간 국제결혼의 특징

1. 국제결혼의 배경

(1) 국제결혼 현황

현대사에 있어 한국남성과 베트남여성간의 국제결혼은 한국군의 월남 파병에 따라 인적교류가 확대된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최초의 한국군 월남파병이 1964년 9월 시작된 이래 1973년 3월까지 8년여 한국은 34만 명의 군인과 산업기술자를 포함하여 약 70만여명의 한국남성들이 베트남에서 활동하였다. 그 과정에서 한국남성들 일부가 베트남여성과 관계를 맺었고, 이들 사이에서 수천 여명의 한인 2세들이 태어났다. 이들 중 베트남전쟁이 끝나면서 약 100여명 정도가 베트남여성들을 동반하고 한국에 귀국하였다.²⁾

베트남은 1986년 도이모이(Doi Moi)라 불리는 개혁개방정책을 채택하였고,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1992년 한-베 국교 이후 국제결혼이 재개되어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³⁾ 한국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의 2011. 12. 31.현재 ‘국적별 결혼이민자(국민의 배우자)현

2) Ha Minh Thanh, 「1992년 이후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국제결혼에 대한 연구-베트남 여성의 문화적 적응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석사학위청구논문, 2008. 8. 10쪽.

3) 신유경·장진경, “문화상호주의적 관점에서 본 베트남 다문화가족의 가족생활적응 사례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제14권 3호), 2010. 8. 110쪽.

황'에 의하면,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이 37,335명(29.9%), 중국결혼이주여성이 31,092명(24.9%), 한국계 중국결혼이주여성이 21,626명(17.3%), 일본결혼이주여성이 10,152명(8.1%)의 순으로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⁴⁾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은 2011년 말 현재 47,187명으로, 이중 10,066명(21.34%)이 한국국적을 취득하였고, 37,121명(78.66%)은 한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채 '한국인의 배우자' 신분으로 생활하고 있다. 이들 베트남결혼이주여성들은 서울·경기도권역 15,703명(33.27%), 경상도권역 15,505명(32.85%), 전라도권역 7,085명(15.02%), 충청도권역 6,611명(14.01%), 강원도권역 1,625명(3.45%), 제주도 658명(1.4%) 등 전국적으로 넓게 퍼져 거주하고 있다.⁵⁾

(2) 국제결혼 수요의 증가와 베트남여성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 이후 결혼적령 남성인구가 결혼적령 여성인구를 초과하는 혼인적령기 남녀의 성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었다. 한편 교육수준이 남성들과 동등하게 높아진 한국여성들이 사회·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생활을 기피하면서 특히 농어촌남성들이 한국인 배우자를 맞이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농촌 총각들이 신부를 구하지 못해 결혼을 하지 못하면 인구감소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농촌이 공동화 된다는 이유로 공공연히 국제결혼을 조장해 왔다. 외국인여성과의 결혼을 통하여 농촌인구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이, 외국인여성들의 결혼을 통한 코리안 드림과 일치하면서 국제결혼중개업체의 활동기반을 마련해 주었고 국제결혼의 대폭적인 증가로 이어졌다. 이렇게 본다면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 농촌의 안정과 인구감소의 위기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가적 필요에 의해 대규모로 초대된 이주자인⁶⁾ 셈이다. 최근에는 고령자, 도시 저소득근로자 및 이혼경력자 등 우리나라에서 혼인하기 쉽지 않은

4) http://www.immigration.go.kr/HP/TIMM/imm_06/imm_2011_12.jsp(2013. 4. 3. 검색)

5) http://kosis.kr/gen_etl/start.jsp?orgId=110&tblId=TX_11025_A010&conn_path=I3&path=NSI
http://kosis.kr/gen_etl/start.jsp?orgId=110&tblId=TX_11025_A022&conn_path=I3&path=NSI(2013. 4. 3.검색) 을 합산하여 가공하였음.

6) 김현미, “결혼이주여성들의 귀환결정과 귀환경험”, 『젠더와 문화』(제5권 2호), 2012. 141쪽.

남성들이 국제결혼의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한국과 베트남은 농경사회의 경제적 기반, 유교와 불교문화의 바탕위에 서 사회와 가정을 형성하고 있어 가부장제 가족제도에 친숙하며 부모에 효도하고 조상을 숭배하며 남아선호사상이 뿌리 깊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편 양 국가는 외세에 의한 침략, 동족간의 전쟁 등을 겪으면서 감정적 동질감도 갖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유사점과 베트남전쟁으로 인한 역사적 친숙감이, 국제결혼을 결심한 한국남성들이 결혼상대자로 베트남여성을 선호하는 하나의 이유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동기는 베트남여성의 외모가 한국인과 비슷하여 자녀가 외모적 차별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것이란 기대로 보인다. 이렇게 국제결혼에 임하는 한국남성은 2세 걱정을 하지만 실상 배우자로서 베트남여성에 대한 이해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⁷⁾ 베트남여성을 맞이하는 시댁식구들 역시 그녀가 한국의 사회·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소통능력도 충분치 않다는 것을 배려하려는 자세도 노력도 없는 경우가 많다. 결국 한국의 가부장제적 가족문화로 유입된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은 베트남에서 보았던 한류문화로 포장된 자상하고 멋진 한국남성과 현대화된 안락한 농촌생활을 기대하지만, 현실은 실망만 안겨주고 있다고 생각한다.⁸⁾

(3)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특성

베트남은 오랜 전통인 유교와 불교의 영향을 받아 가부장제, 효, 공동체문화 등 지배적인 가치관이 한국과 비슷하다. 전통적 문화생활에 있어서 가족과 친지들에 대한 의무가 강하게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 부모에 순종하고, 부모의 가르침에 거역하는 것을 불효라고 여기며,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하고 제사를 지내는 것을 당연시한다.⁹⁾ 그러나 베트남의 효도 전통은 한자문화권의 효도와 구별되는 베트남 고유의 문화체계라고 한다.

7) Ibid, p.110

8) 정혜영·김진우, “베트남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의 문화적응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 연구”, 『한국사회복지학』(제62권 2호), 2010. 5. 40-41쪽.

9) 김태자·권복순,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통과의례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제43호), 2012. 12. 95-96쪽.

즉 베트남은 유가의 영향을 받기 전·후 여전히 가족과 사회에 있어 수평적인 관계를 중시하였다고 한다.¹⁰⁾ 이러한 사회·문화적 배경 속에서 성장해 온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은 한국남성이 상상하고 있는 여성상에서 많이 벗어난다. 아래에서 그 특징을 살펴보면,

1)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

베트남은 다양한 민족이 국가로 형성되어 발전되고 있는 나라로, 현재 54개의 민족이 4개의 언어로 소통하고 있다. 베트남은 오래전부터 많은 나라와 교류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경우와 달리 국제결혼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다. 따라서 최근 한국남성들과 베트남여성간의 결혼을 새삼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단지 최근에 한국인과 베트남인의 접촉기회가 많아지면서 짧은 시간에 많은 국제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 결과 국제결혼에 대하여 특별한 편견이 없으며, 다문화가정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특별한 문제로 삼을 필요가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은 다문화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제도 등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¹¹⁾

2) 평등한 가족관계

우리나라나 베트남은 동일한 유교문화의 바탕위에서 가족문화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조선왕조 창건이념으로 유교를 수용하여 유교이념에 근거한 사회질서를 형성하고, 일반 백성들도 유교적 가족질서를 수용하였다. 이에 비해 베트남은 철학적인 유교이념보다는 실용적인 유교

10) Nguyen Ngoc Tho, "CHŨHIẾ VÀ ĐẠ TRUNG XÃ HỘ QUA HAI NỀ VĂN HOÁ(두 문화를 통해 보는 효와 사회적 특징)", 『한국-베트남 문화공통점과 차이점 및 한-베 협력에 미치는 영향』, 호치민국립인문사회과학대학교, 2013. 4. 23. 208쪽.

11) Do Ngoc Luyen, "NGHIÊN CỨ NHẬ THỨ VÊ GIA ĐÌNH ĐA VĂN HÓA VIỆT NAM VÀ HÀN QUÓ -TẬ TRUNG NGHIÊN CỨ QUAN HỆ GIA ĐÌNH-(한국과 베트남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 연구-가족관계를 중심으로-)", 『한국-베트남 문화공통점과 차이점 및 한-베 협력에 미치는 영향』, 호치민국립인문사회과학대학교, 2013. 4. 23. 518-519쪽.

의례와 도덕적 규칙 등을 정치권력의 필요에 의하여 수용하였다. 따라서 한국은 정치제도가 바뀌어도 가족제도를 비롯한 국민들의 사상에 큰 영향이 없지만, 베트남은 정치제도가 바뀌면 유교도 사라질 수 있고 국민들의 사상이 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상적 배경은, 우리나라에서 최근까지 남존여비, 가부장제 가족제도를 당연시 하는 풍조였고, 베트남은 이미 20세기 중반부터 남녀평등을 수용하여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베트남에서는 여자도 당연히 호주가 될 수 있고, 자식들이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으며, 이혼시 여자가 자녀양육권을 갖는 것을 당연시한다.¹²⁾ 하지만 베트남도 우리나라와 같이 한 가족의 혈통유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아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일찍부터 남녀평등사상이 사회의 압도적 사상으로 인식되어 아들 선호사상은 약화되고 있다고 한다.¹³⁾ 특히 한국에 시집을 많이 오는 베트남 남부지역은 부계와 모계 가족을 모두 친족범위에 포함시키는 등 남녀평등 의식이 강하며, 한국과 달리 남아선호사상이 그리 심하지 않은 편이다.¹⁴⁾

3) 결혼동기와 출신지역

베트남에서 국제결혼은 주로 베트남 서남부지방 출신의 여성과 한국 혹은 대만남성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진다.¹⁵⁾ Tran Huu Yen Loan의¹⁶⁾ 베트

12) Ibid, pp. 520-521.

13) 은기수, “한국과 베트남의 자녀 성 선호 비교”, 『한국-베트남 문화공통점과 차이점 및 한-베 협력에 미치는 영향』, 호치민국립인문사회과학대학교, 2013. 4. 23. 114-117 쪽은 베트남의 북부지역인 하노이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아들선호사상이 한국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하노이지역의 특색인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은 주로 베트남 서남부지역 출신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앞의, Nguyen Ngoc Tho, “두 문화를 통해 보는 효와 사회적 특징“, 213쪽 참조).

14) 정혜영·김진우, “베트남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의 문화적응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 연구”, 『한국사회복지학』(제62권 2호), 2010. 5. 31-32쪽.

15) Tran Huu Yen Loan, “NHỮNG VẤN ĐỀ CỦA PHỤ NỮ VIỆT NAM KẾT HÔN NHẬP CƯ TẠI HÀN QUỐC - VẤN ĐỀ CỦA TOÀN CẦU HÓA VĂN HÓA - XÃ HỘI (베트남 결혼이민자의 특성에 관한 연구-문화 및 사회적인 글로벌화에 관한 문제-)”, 『한국-베트남 문화공통점과 차이점 및 한-베 협력에 미치는 영향』, 호치민국립인문사

남결혼이주여성 1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하 ‘2012년 Loan 실태조사’라 한다)에서도 결혼비자신청자 대부분이 호치민 남부 농촌지역 출신들이었다. 신부들이 특히 남부지역의 농촌지역 출신인 것은 신부를 구하는데 쉬울 뿐만 아니라 외국인과의 국제결혼에 대한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이다. 한편 혼인등록절차가 간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을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이해가 맞기 때문이기도 하다.¹⁷⁾ 이들 농촌지역 출신들은 대부분 대가족제도 하에서 형제자매가 많고, 국제결혼을 통하여 어려운 현실에서 탈피할 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을 부양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베트남 서남부지방 출신여성들의 주요 결혼 동기는 호도라고 한다.¹⁸⁾ 국제결혼이 한국에서 돈을 벌어 친정 가족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열망과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보고자 하는 희망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외국인 여성들이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것은 결혼사증을 받게 되면 국내입국과 동시에 경제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¹⁹⁾ 베트남의 많은 여성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비용이 들지 않는 국제결혼을 이주방식의 하나로 선택하고 있다.²⁰⁾

4) 연령차이

베트남 남부 농촌지역에서 고된 노동을 감당해야 했던 여성들은 어린

회과학대학교, 2013. 4. 23. 542쪽.

- 16) Tran Huu Yen Loan 호치민국립대 호치민인문사회과학대학교 교수가 주 호치민대한민국 총영사관의 협조로 2012. 11월~12월 결혼비자신청을 한 베트남결혼이주여성 1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로 자세한 것은 위의 논문, 542-554쪽 참조.
- 17) Tran Huu Yen Loan, 앞의 “NHỮNG VẤN ĐỀ CỦA PHỤ NỮ VIỆT NAM KẾT HÔN NHẬP CƯ TẠI HÀN QUỐC - VẤN ĐỀ CỦA TOÀN CẦU HÓA VĂN HÓA - XÃ HỘI(베트남 결혼이민자의 특성에 관한 연구-문화 및 사회적인 글로벌화에 관한 문제-)“, 547쪽.
- 18) Nguyen Ngoc Tho, 앞의 “CHŨHIÉ VÀ ĐẶ TRUNG XÃ HỘ QUA HAI NỀ VĂN HOÁ(두 문화를 통해 보는 효와 사회적 특징)“, 213쪽.
- 19) 김재련, “결혼중개업에 대한 검토 및 보완필요성에 대하여” 『국제결혼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세미나』 대한변호사협회·서울가정법원, 2011. 7. 7. 25쪽.
- 20) 신유경·장진경, 앞의 “문화상호주의적 관점에서 본 베트남 다문화가족의 가족생활적응 사례연구, 111쪽.

나이에 가족의 권유로 국제결혼을 선택하게 된다.²¹⁾ 농촌에서는 고등학교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딸은 16세부터 결혼시키려는 부모가 많으며, 결혼상대자와 연령 차이는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베트남결혼이주여성들의 평균연령은 다른 나라 결혼이주여성에 비해 가장 낮다. ‘2012년 Loan 실태조사’에 의하면 신부의 평균연령은 23.4세, 한국인 남편의 평균연령은 42세로 18.6세 차이가 난다.²²⁾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와 비교하면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평균연령은 24.3세로 0.9세 어려졌고, 남편은 41.3세로 0.7세 더 많아져, 종래 17세 나이 차이가 18.6세로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²³⁾ ‘2005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의²⁴⁾ 평균 연령차이 11세와 비교하면 그 격차는 더욱 커졌다. 이러한 연령 차이는 노령자 및 재혼자의 급증에 기인하는 것으로, 향후 자녀출산 및 양육에 따른 문제, 청소년 문제, 지역사회의 문제 등으로 확대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5) 빈약한 한국어 소통능력

언어소통은 가정생활을 꾸러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자 가장 좋은 도구이다. 그러나 ‘2012년 Loan 실태조사’에 의하면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90%가 한국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하고, 한국어 구사가 가능하다고 응답한 경우에도 실제적으로는 아주 초보적인 수준의 의사소통만이 가능하다고 한다.²⁵⁾ 결혼이주여성의 빈약한 언어소통 능력은 부부간 소통의

-
- 21) 정혜영·김진우, 앞의 “베트남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의 문화적응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 연구”, 31쪽.
- 22) ‘2012년 Loan 실태조사’에 의하면,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연령분포는 19세 미만 13명, 20-25세 52명, 26-30세 24명, 31-35세 7명, 36세 이상 4명이다. 이에 비해 한국남성은 30세미만 4명, 31-35세 6명, 36-40세 41명, 41-45세 24명, 46-50세 12명, 51세 이상 13명이다.
- 23) 권태연,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 실태에 관한 연구-중국, 베트남, 몽골출신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몽경상연구』(제22권 제2호), 2011. 8. 70-71쪽.
- 24) 보건복지부,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정책방안』, 2005. 57쪽.
- 25) Tran Huu Yen Loan, “NHỮNG VẤN ĐỀ CỦA PHỤ NỮ VIỆT NAM KẾT HÔN NHẬP CƯ TẠI HÀN QUỐC - VẤN ĐỀ CỦA TOÀN CẦU HÓA VĂN HÓA - XÃ HỘI (베트남 결혼이민자의 특성에 관한 연구-문화 및 사회적인 글로벌화에 관한 문제-)”, 546쪽.

단절과 갈등의 원인이 되며 가족구성원간의 이해와 협조에 방해가 된다. 특히 자녀양육에 있어 자녀의 교양에 학부모로서의 실질적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자녀와의 갈등, 자녀의 사회성 형성 등에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 또 언어소통능력의 저하로 결혼이주여성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어 미숙련 단순노동에 의지하게 됨으로써 사회적 약자로서의 지위가 고착화되는 악순환이 계속 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언어소통의 문제는 결국 가정의 해체로 이어질 수 있고, 한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귀환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몰리게 되며, 이혼 후 자신의 호적정리도 처리하지 못해 재정착에 걸림돌이 된다.

6) 이주여성의 저학력과 문화적 차이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의하면,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교육수준은 중졸이 전체의 41.9%, 초등학교 졸업이하도 20%가 되어 중졸 이하가 61.9%를 차지하고 있다. 고졸 34.1%, 대졸 이상 고학력자는 4%에 불과하다. 이는 고졸학력 이상자가 88.1%인 몽골, 65.8%를 차지하는 중국 조선족, 63%인 중국 한족 출신 이주여성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다.²⁶⁾

한편 베트남결혼이주여성과 한국남편은 상호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많은 갈등이 누적된다. 남녀평등이 실현되고 대화와 타협에 익숙하며 개인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있는 베트남의 가정과 사회에서 성장한 이주여성들은, 한국의 수직적인 가부장적인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 결과 분명한 자기주장에 대한 남편과 시집식구들의 몰이해로 인한 갈등, 가사노동 분담 등에 대한 갈등, 특히 비언어적 행동에 대한 오해 등²⁷⁾ 사소한 것 같은 문제가 가정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한다.

26) 권태연, 앞의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 실태에 관한 연구-중국, 베트남, 몽골출신 여성들을 중심으로-”, 71-72쪽.

27) 안정현, “문화의 이질성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방안”, 『한국-베트남 문화공통점과 차이점 및 한-베 협력에 미치는 영향』, 호치민국립인문사회과학대학교, 2013. 4. 23. 414쪽에 의하면, 베트남인이 팔짱을 끼고 뒷사람의 말을 듣는 모습은 가장 겸손한 자세라고 한다. 또 미안하다는 표시로 베트남인들은 가볍게 웃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한국인에게서는 자신을 무시한다는 의미로 전달된다. 한국인들이 흔히 화가 났을

2. 정비되지 않은 국제결혼시스템

(1) 베트남의 불법적·영리적 결혼중개

베트남결혼이주여성들은 다른 국가출신 여성들에 비해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한 만남이 66.6%로 중국 조선족(8.7%), 중국 한족(20.8%), 몽골(32.1%)에 비하여 훨씬 높다.²⁸⁾ ‘2012년 Loen 실태조사’에서도 전체의 62%가 결혼중개업체의 소개로 결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유연애는 2%에 불과하다. 그만큼 국제결혼에 있어서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국제결혼중개업소의 난립으로²⁹⁾ 국제결혼 당사자들의 피해가 급증하자 보건복지부가 2007. 12. 14. 결혼중개업법을 제정·시행하면서 ‘결혼중개’가 법률상의 개념으로 등장하였다. 결혼중개업법의 제정은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형성에 기여하리란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잘못된 알선으로 인한 피해, 한국남성의 잘못된 정보제공에 의한 사기성 결혼에도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는 등 결혼중개업법의 한계가 드러났다.³⁰⁾ 이에 2010. 5. 17.과 2012. 8. 2. 등 2차례에 걸친 결혼중개업법의 일부개정을 통하여³¹⁾ 국제결혼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국

때, 손으로 때리는 흉내를 내거나 야단을 칠 때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의 행위는 베트남에서는 결코 허락되지 않는 행동이라고 한다.

- 28) 권태연, 앞의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 실태에 관한 연구-중국, 베트남, 몽골출신 여성들을 중심으로-”, 76-77쪽.
- 29) 한국에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체 수는 2009년 말 1천215개에서 2010년 1천253개, 2011년에는 1천519개로 증가해 왔으나, 2012년 말 현재 1천423개로 전년도 보다 96개(6.7%) 감소하였다.¹⁾ 국제결혼업체 수가 줄어든 것은 집계를 시작한 2009년 이후 처음이다.
- 30) 이승우, “혼인이주여성의 지위와 법적 문제,” 『서울법학』(제16권 제1호), 서울시립대학교, 2008. 139-141쪽에 결혼중개업법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하여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 31) 특히 2012. 8. 2. 시행된 개정 결혼중개업법은 국제결혼중개의 상대방을 만 18세 이상인 자로 하여야 하고, 단체맞선 및 집단기숙을 시킬 수 없도록 하여 매매혼 성격의 결혼중개를 금지시켰다(동법 제12조의2). 또 맞선 당사자들에게 ‘정신질환 여부, 성매매 알선·강요 및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등 상대방의 상세한 신상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현지 공증인에 의한 공증절차를 도입하여(동법 제10조의2) 신뢰도를 높였다. 또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는

제결혼중개업을 등록제로 전환하였다(결혼중개업법 제14조의2).

베트남에서 영리적인 국제결혼중개는 1991년 베트남이 자본시장을 개방하자 대만자본의 진출과 함께 시작되어, 대만과 베트남 현지 결혼중개업자들에 의해 베트남여성들이 대만으로 결혼이민을 시작하였다.³²⁾ 이후 이러한 결혼중개시스템이 한국의 국제결혼중개업자들에게도 전파되어 베트남여성들이 불법·영리적인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주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³³⁾ 베트남여성과 한국남성의 국제결혼의 중개는 한국의 국제결혼중개업체가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중개업자를 통하여 베트남의 사설 중개업체와 업무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베트남의 중개업체는 전국적으로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베트남 여성을 모집하여 통제성이 강한 장소에서 기숙하면서 베트남 당국의 단속을 최대한 피하면서 집단맛선을 통하여 혼인상대를 확정하도록 유도한다.³⁴⁾ 이러한 베트남에서 행해지는 인신매매적 성격이 농후한 결혼중개관행에 의한 인권침해는 그 도를 넘어 국제적인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³⁵⁾ 국제결혼중개에서 외국 현지법령을 준수하는 것은 당연하다(결혼중개업법 제11조 1항). 따라서 외국의 현지 법령이 결혼중개업체에 의한 결혼을 금지하는 경우, 한국의 국제결혼중개업자나 그 대리인에 의한 결혼중개행

(동법 제10조의5)¹⁾ 한편,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광고하지 못하도록 표시·광고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는(동법 제12조)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 32) 정혜영·김진우, 앞의 “베트남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의 문화적응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 연구”, 31-32쪽.
- 33)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중국 등이 국제결혼중개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김두년 연구책임자, 신용묵·이정환 공동연구자, “국제결혼중개업 건전화방안,” 여성가족부 연구용역보고서(연구보고 2010-49), 제3장 외국의 국제결혼 관련 제도; 김재련, 앞의 “결혼중개업에 대한 검토 및 보완필요성에 대하여,” 18-20쪽 참조.
- 34) 임영수, “혼인이주자의 보호법제에 관한 고찰-해석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동아법학』(제58호), 2013. 2. 612쪽; 한편, 국제결혼의 중개가 대도시에서만 이루어지다보니 베트남여성들의 비용이 증가하고, 결국 베트남여성들이 불법적인 결혼중개업자에게 인질이 되는 셈으로, 훗날 한국에서의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방해하는 원인이 된다.
- 35) 국제결혼중개의 현실은 외국인여성과 한국남성들 수 십명을 한꺼번에 맛선을 보게 하고 한두 차례 만나면 바로 합방을 시킨 후 결혼절차를 진행하는 시스템이라고 한다. 대한변협신문, ‘국제결혼중개업체 전면 비영리화 해야’ 2011. 9. 12. 1쪽.

위는 위법이다.³⁶⁾ 그런데 베트남에서는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³⁷⁾ 베트남 정부에서 불법시 하는 국제결혼중개를 우리 정부가 묵인하는 태도는 아무리 혼인이 사적인 영역이라 하더라도 국가간의 외교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현재 베트남에서 국제결혼과 관련된 정부조직으로는 여성의 권리와 여성의 양성평등을 지원하는 ‘베트남 여성연맹(Vietnam Women’s Union: VWC)’ 산하 ‘혼인지원센터(Marriage Support Center; MSC)’가 외국인에 대한 혼인관련 정보제공과 만남을 주선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베트남 여성들의 국제결혼은 영리적인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³⁸⁾ 사정이 이렇다 보니 베트남 현지 협력업체의 불법적인 결혼중개로 혼인이 이루어지는 형상이고, 베트남 정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베트남여성들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정부와 한국 정부간 긴밀한 협조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우선 베트남 정부는 혼인지원센터(MSC)가 불법적인 국제결혼중개업체를 대체할 수 있는 중개시스템을 갖추도록 지원하면서, 불법적인 결혼중개를 저지할 수 있도록 법집행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도 베트남의 비영리 결혼중개의 원칙과 보조를 맞추는 결혼중개업법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비영리단체가 베트남여성과의 혼인을 주선하고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 결혼중개업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그 밖의 금품’을 수수하는 것으로 보아 법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유연한 해석을 통하여,³⁹⁾ 비영리단체의 탈법이나 위

36) 이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은 이렇게 위반한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외국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 위반 내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결혼중개업법 제11조 제2항).

37)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리와 관련한 입법례는, 김두년 연구책임자, 신용묵·이정환 공동연구자, “국제결혼중개업 건전화방안,” 위의 여성가족부 연구용역보고서(연구보고 2010-49), 제3장 외국의 국제결혼 관련 제도 참조.

38) 임영수, 앞의 “혼인이주자의 보호법제에 관한 고찰-해석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611쪽.

39) 김두년 연구책임자, 신용묵·이정환 공동연구자, 앞의 여성가족부 연구용역보고서(연구보고 2010-49), 「국제결혼중개업 건전화방안」, 161쪽은 결혼중개업법 제2조 제2호의 개념을 “결혼중개업에 실비 등 어떤 명목으로든지 금품을 받고 결혼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로 수정하자고 한다.

법을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

(2) 속성·매매혼적 결혼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결혼은, 베트남의 결혼중개업체가 전국적으로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베트남여성을 모집하여 통제성이 강한 장소에서 기속시키면서 베트남 당국의 단속을 최대한 피하면서 집단맛션을 통하여 혼인상대를 정하도록 유도한다.⁴⁰⁾ 이 후 한국남성은 자신에게 선택받은 베트남여성이 혼인을 결심하면 결혼식과 신혼여행을 마치고, 귀국시 한국에서의 혼인신고에 필요한 제 서류를 준비하여 베트남 신부를 초청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 법무부 지침상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는 외국인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배우자를 등록한 후 결혼사증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⁴¹⁾

‘2012년 Loen 실태조사’에 의하면,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남성이 베트남 신부와 만난 횟수는 2회가 전체의 76%, 3회 이상이 18%에 불과하다. 만나자마자 결혼한 경우도 3%나 되었다. 결혼전 2회 정도 만나는 것은 양 국가의 혼인신고절차에 따른 최소한의 과정이다. 3회이상 만나는 것은 인터뷰 탈락 등에 따른 예외적인 방문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은 대부분 속성으로 결혼을 하고 있다.⁴²⁾ 그 결과 상대방에 대한 신분, 건강, 신용 등에 대해 충분한 고려없이 속성으로 이루어진 결혼은 불완전한 언어소통과 혼재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어렵게 한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이혼율은⁴³⁾ 향후 충분한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한다.

40) 임영수, 앞의 “혼인이주자의 보호법제에 관한 고찰-해석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612쪽; 한편, 국제결혼의 중개가 대도시에서만 이루어지다보니 베트남여성들의 비용이 증가하고, 결국 베트남여성들이 불법적인 결혼중개업자에게 인질이 되는 셈으로, 훗날 한국에서의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방해하는 원인이 된다.

41)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http://vnm-hanoi.mofat.go.kr/kor/as/vnm-hanoi/consul/notice/index.jsp>

42) Tran Huu Yen Loan, 앞의, “NHỮNG VẤN ĐỀ CỦA PHỤ NỮ VIỆT NAM KẾT HÔN NHẬP CƯ TẠI HÀN QUỐC - VẤN ĐỀ CỦA TOÀN CẦU HÓA VĂN HÓA - XÃ HỘI (베트남 결혼이민자의 특성에 관한 연구-문화 및 사회적인 글로벌화에 관한 문제-)”, 545쪽.

43) 뒤의, III. 3. 1)의 이혼현황 참조.

‘2006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의하면 한국남성이 국제결혼에 지출한 비용은 800만원 이하가 전체의 22%, 800만원~1,500만원이 71%에 달하였다. 이러한 경비는 한국남성의 베트남 방문비용, 신부의 선물비용 등 대부분 결혼준비에 소요되었다. 신부측에 전달된 소위 ‘결혼자금’은 100만원 내외로, 이 중 현지 중개업체가 최대 6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남은 40여만원이 베트남 신부측에 전달된다고 한다.⁴⁴⁾ 하지만 일부 한국남성들과 그 가족들은 국제결혼을 하면서 지출한 거액의 목돈으로 말미암아 베트남신부를 사오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한다. 이러한 오해는 이주여성이 도망갈 수 있다는 이유로 결혼이주여성의 커뮤니티 참석, 교육과정 참여 등 정상적인 활동까지도 제약하며 갈등과 폭력 등 인권유린의 원인이 되고 있다.

Ⅲ. 결혼이주여성의 정착에 있어서의 제도적 개선방안

1. 국제결혼의 성립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 한국인 남성의 경우에는 민법에 의한 혼인성립요건을, 베트남 여성의 경우에는 베트남법이 요구하는 성립요건을 각각 구비하여야 한다. 따라서 한국남성과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은 각각의 본국법에서 정하는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을 갖추어, 내국인 조항에 따라 한국법에 의한 혼인신고를 하여야 하므로⁴⁵⁾ 혼인신고시에 혼인이 성립하게 된다. 혼인신고 절차는, 한국인 남편이 주한베트남 대사관에서 자신의 베트남출입국스탬프, 주민등록부 등과 베트남 신부의 출생증명서, 미혼증명서, 호적부사본 등을 제출하여 혼인요건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 후, 한국내 자신의 주소지 등에서 혼

44) 보건복지부, 『결혼중개업체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연구』, 2006. 117쪽.

45) 서울지법 2003.7.25. 2001가합64849에 의하면, “대만 국적 남자와 대한민국 국적 여자가 우리나라에서 혼인신고를 했으나 한성화교협회의 호적등기부에 혼인사실을 등재하였을 뿐 혼인거행지법인 우리나라 민법 제821조 및 호적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면 그 혼인은 유효한 혼인으로서 효력이 없으며, 그 사이에 출생한 자는 혼인외의 출생자”라고 한다.

인요건증명서 및 베트남 신부의 최후 주소지(혹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역의 인민위원회에서 발행된 혼인상황확인서, 베트남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혼인신고를 하는데,⁴⁶⁾ 가족관계등록관서는 혼인성립요건의 구비여부를 형식적으로 심사할 뿐이다. 이후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로 기재된 혼인관계증명원 등을 구비하여 다시 베트남을 방문(2차)한다. 주베트남 한국대(영)사관에서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를 발급받아, 베트남 신부의 고향 호적관서인 소드팍(법무성)에 혼인등록신고서, 건강증명서(정신질환 및 AIDS검사 포함) 등을 제출하여 혼인등록을 한다. 이 혼인등록을 위하여 당사자 쌍방이 함께 출석하여야 하고, 혼인기관 대표가 쌍방의 의사를 확인하여 혼인증서를 교부한다.⁴⁷⁾ 베트남 당국은 국제결혼 허가 심사를 위한 혼인당사자 인터뷰 과정에서 한국인 남성에게 아주 초보적인 수준의 베트남어 습득을 일정부분 요구하기도 한다.⁴⁸⁾ 이후 베트남 신부는 주베트남 한국대(영)사관에서 결혼사증을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하게 된다.⁴⁹⁾

2011. 3. 7. 개정된 우리나라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은 결혼목적의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기준을 강화하여, 국제결혼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건전한 가족 형성을 지원하고자 한국인 배우자에게 국제결혼에 관한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였다.⁵⁰⁾ 이 안내프로그램은 국제결혼 관련 정보, 현지국가의 제도, 문화, 국제결혼으로 인한 피해사례 등을 소개한다.⁵¹⁾ 한국 배우자가 베트남배우자의 결혼사증 발급

46) 대법원 등록예규 제361호, ‘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라. 참조

47) 베트남 혼인·가족법 제14조. 따라서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기 위하여 한국남성은 최소한 2회 방문은 필수적 횟수이고, 3회 이상인 경우에는 인터뷰 탈락에 따른 불가피한 방문일 가능성이 많다. Tran Huu Yen Loan, 앞의, “NHỮNG VẤN ĐỀ CỦA PHỤ NỮ VIỆT NAM KẾT HÔN NHẬP CƯ TẠI HÀN QUỐC - VẤN ĐỀ CỦA TOÀN CẦU HÓA VĂN HÓA - XÃ HỘI(베트남 결혼이민자의 특성에 관한 연구-문화 및 사회적인 글로벌화에 관한 문제-)“, 545쪽.

48) Ibid., p. 551.

49) Ibid., p. 545.

50) 법무부, 법무부령 제733호. 2011.3.7. 일부개정 이유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0937&lsId=008494&chrClsCd=010202&urlM ode=lsEflInfoR&viewCls=lsRvsDocInfoR#0000>

을 신청하기 위하여 이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는 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초청장에 안내프로그램 이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⁵²⁾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의 도입으로 국내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 결과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단 3시간 만에 결혼상대 국가의 환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국제결혼에 임하는 남성들이 자발적으로 상대방의 문화와 언어를 습득하고 생활습관과 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국제화시대에 걸맞게 거시적 지표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 등은 언어 및 상대방 국가의 문화를 비롯한 배우자와의 갈등해소를 위한 실천 가능한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여야 한다.

2. 결혼사증의 발급과 외국인등록

베트남 현지 한국대(영)사관에서는 제출서류의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 및 혼인의 진정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한다.⁵³⁾ 결혼사증(F-6)을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한 결혼이주여성은 90일 이내에 법무부 출입국관리소를 방문하여 외국인등록(출입국관리법 제31조) 및 ‘한국인의 배우자(F-6-1)’로 체류자격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⁵⁴⁾ 베트남주재 한국대(영)사관에는 베트남결혼이주여성에게 90일 이하의 단수사증 발급이 위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민의 배우자가 된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은 체류기간 2년의 체류자격을 갖지만, 취업활동 등 생활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⁵⁵⁾ 다만 베

51) 국내 배우자에 대한 안내프로그램이수 의무화는 당초 1박2일의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으나 현재 3시간으로 단축되었고, 이 안내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하여는 2014년 2월 28일까지 검토하여 개선조치를 하거나 그 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법무부, 법무부령 제733호. 2011.3.7. 시행, 제84조의2).

52) 법무부, 법무부령 제733호. 2011.3.7. 시행, 제9조의4 제2항 참조.

53) 대한변호사회, 『이주외국인을 위한 법률매뉴얼 I 개정판』, 2013. 1. 24쪽.

54)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증발급 안내 매뉴얼』, 2012. 10. 68-70쪽.

55)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체류 안내 매뉴얼』, 2012. 10. 14-16쪽. 그러나 출입국관리 실무에서는 외국인여성이 ‘국민의 배우자(F-6-1)’로서 외국인등록을 하면 체류기간 1년을 부여한다. 다만 한국정부가 실시하는 ‘해피스타트프로그램’의 이수신청을 한 경우에는 2년의 체류자격을 부여하여, 이들의 빠른 한국생활에의 정

트남결혼이주여성은 한국국적을 취득할 때까지 ‘한국인의 배우자’이지만 신분은 여전히 외국인이다.

한편 결혼사증(F-6)이 발급되기 전 베트남여성이 혼인의사를 철회하거나 가출 등으로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⁵⁶⁾ 이미 한국에서 한 혼인신고의 효력이 문제된다. 결혼사증 발급이 진행되는 신부와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 그 혼인은 당사자 간에 혼인의 실질(혼인생활)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것이어서 무효로 보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베트남주재 한국대(영)사관은 혼인의 진정성이 의심되거나 혼인생활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면 결혼사증 발급을 거부하기도 한다(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 4호).⁵⁷⁾ 결혼사증 발급의 거부는 한국에서 혼인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혼인신고를⁵⁸⁾ 한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혼인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것이 된다. 결혼사증을 발급받지 못하여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는 베트남여성의 법률적 지위는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 것인지 문제이다. 이 경우 혼인은 성립하였으므로 비록 한국에서의 혼인생활은 불가능하지만 베트남이나 제3국에서의 혼인생활은 가능하다. 그렇다면 결혼사증 발급이 거절되더라도 혼인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⁵⁹⁾ 베트남여성의 국내입국 거절이 장기화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을 영위할 수 없으므로 각자 가족관계등록부와 베트남 호적부를 정리

작을 유도하고 있다.

- 56) 한국염, “수령과도 같은 국제결혼중개업문제, 해결책은 없는가?” 『국제결혼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세미나』, 대한변호사협회·서울가정법원, 2011.7.7. 37쪽은 이러한 사유 등으로 인한 혼인해소를 저지하기 위하여 현지 결혼중개브로커들이 여성측의 토지 문건을 담보로 잡히거나 가족을 협박, 심지어 성폭력을 행사해 임신을 지키는 등 인권침해가 심각하지만 이를 규제할 특별한 방안이 없다고 한다.
- 57) 결혼사증 발급이 거부되는 경우에는 비자발급 불허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야 재접수를 할 수 있다. 다만, 재접수 제한기간 내일지라도 임신·출산 등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재접수를 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비자발급 거부사유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결혼비자발급은 다시 거부된다.
- 58)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는 외국인은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입국하게 되므로, 법무부지침은 결혼사증을 발급받기 전에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배우자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 59) 한국남성은 원칙적으로 부양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지만, 현지 베트남배우자의 고의·과실로 결혼사증의 발급이 거절된 상태라면 부양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할 필요가 있다.⁶⁰⁾ 한국 법원에서는 결혼사증발급이 기각되었다는 사증기 각 통지서가 제출되는 경우 혼인무효청구를 받아들이고 있다.⁶¹⁾ 베트남여성도 베트남 호적을 정리하여야 새로운 가족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나, 현실적으로 베트남 법원에서 이혼절차를 밟는 데에는 한국남성의 협조 등 여러 제약이 있어, 베트남여성의 재출발에 법률적으로 장애가 될 것으로 추측된다.

국제결혼에 있어 가장혼인은 국내의 가정법원에서 다루어지기 이전에, 결혼사증을 발급해 주는 한국대(영)사관 내지 혼인신고를 접수하는 한국 및 베트남의 혼인등록사무소에서 훨씬 낮은 비용으로 여과될 수 있다.⁶²⁾ 베트남도 2002년 제68호 명령 (Decree No.68)으로 제정한 결혼·가족법 제14조에서 결혼등록서류 제출시 결혼 당사자 두 명 모두 출석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베트남 정부는 이러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베트남여성과 한국남성에 대하여 정상적인 결혼여부를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불법적인 결혼중개업체들이 혼인등록이 비교적 쉬운 지역의 베트남여성들을 모집하여 국제결혼을 성사시키며 이윤을 축적하는 불법을 불식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그러한 엄격한 법집행은 ‘법률’이 법전 속에 머무는 규정이 아니라 실천하여야 할 규범이라는 인식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가족관계등록부의 관할 관서에서 혼인의 실질적 심사를 하기에는 한국인 사이의 혼인과의 형평성 등 법논리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 결혼사증의 발급을 조절하는 방안이 보다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가장혼인·매매혼·준비되지 않은 속성혼인으로 인한 당사자의 고통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국제결혼에 있어서

60) 이 경우 한국인 남성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61) 한숙희, “국제혼인의 파탄사유에 관한 실증적 고찰,” 『가족법연구』 제24권 1호, 한국가족법학회, 124쪽; 전연숙, “국제가사소송사건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실무례를 중심으로—,” 『국제사법연구』 제12호, 한국국제사법학회, 2006, 22쪽.

62) 양현아, “가족 안으로 들어온 한국의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실험,” 『사회 통합과 법의 역할』(제8회 한국법률가대회), 한국법학원, 2012.10.22. 57-58쪽.

사전절차의 강화는 어쩔 수 없는 규제라 할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을 가장 많이 송출하는 베트남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한 쌍방의 노력이 있어야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

3. 한국에서의 혼인생활과 국적취득

일반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5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결혼이주여성은 국내 입국 후 간이귀화 요건을 갖추면 보다 단기간 내에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간이귀화란 한국인남성과 결혼한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인의 배우자’(F-6-1)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하면서 ① 한국인남편과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거나, ② 그 한국인남편과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간이귀화 신청을 하여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다(국적법 제6조 2항). 한편 2011. 1. 1.부터 시행된 개정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은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대한민국에서 베트남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베트남국적도 유지할 수 있다.⁶³⁾

그러나 간이귀화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상당하다’는 인정을 받아야 가능하다. 이 상당성의 의미에 대하여 결혼이주여성에게 책임없는 사유 등으로 혼인관계가 단절된 경우,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간이귀화는 기속적 행정행위가 되므로 ‘상당하다’는 규정의 구속력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다.⁶⁴⁾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국적법 등 관계 법령 어디에도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규정은 없다. 이와 같은 귀화허가의 근거 규정의 형식과 문언, 귀화허가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해 보면, 법무부장관은 귀화신청인이 귀화 요건을 갖추

63) 국적법 제10조 2항, 동시행령 제11조 3항.

64) 임영수, 앞의 “혼인이주자의 보호법제에 관한 고찰”, 623-624쪽.

있다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다.⁶⁵⁾ 생각건대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국적법 제6조 2항은 동법 제6조 1항 및 동법 제5조 제1호의 특칙적 성격이므로, 대법원 판결이 전제로 하고 있는 방문동거(F-1-4) 및 특례고용허가자(E-19) 체류자격, 방문취업(H-2) 체류자격,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의 경우와 동일시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혼인단절에 책임이 없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하여는 국적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당연히 귀화를 허가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⁶⁶⁾

또 간이귀화 신청시, 한국인 배우자의 재정능력에 따라 결혼이주여성의 귀화허가여부가 결정되는 시스템은 문제이다.⁶⁷⁾ 특히 재정능력 입증은 농어촌에서 결혼생활을 하는 당사자에게 구비하기 쉽지 않은 요건이다.⁶⁸⁾ 한국인부부나 국제결혼부부나 경제적인 기준에 따라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혼이주여성의 간이귀화에 경제적인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혼인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므로 재고되어야 한다. 또 이러한 요건은 한국생활에 익숙지 않은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을 한국 남편이나 그 가족들에게 예속시켜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인권을 심각

65)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6496 판결.

66) 같은 견해, 임영수, 앞의, “혼인이주자의 보호법제에 관한 고찰”, 624쪽; 서울고등법원 2009. 10. 6. 선고 2009누11135 판결.

67) 법무부는 2011.1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종래 귀화신청서류에 포함되었던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제도를 폐지하였다. 개정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 제1항은 외국인이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초청이 있어야 하고, 그 초청인은 그 외국인의 신원보증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한국인 배우자와 그 가족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많았다. 신원보증제도의 폐해에 대하여는 이승우, 위의 “혼인이주여성의 지위와 법적 문제,” 149-150쪽; 김재련,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여성의 지위,” 『가족법연구』 제22권 1호, 한국가족법학회, 105-106쪽에 자세하다.

68) 재정관련 서류(본인 또는 가족이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는, ①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명의로 3,000만 원 이상의 예금잔고증명, ② 3,0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 전세계약서, ③ 재직증명서(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④ 취업예정사실증명서(재정보증은 불가함) 중에서 하나는 충족되어야 한다.

하게 위협할 수 있다. 신원보증제도의 폐지와 같이⁶⁹⁾ 재정능력에 따른 귀하여부의 폐지가 바람직하다.

IV. 혼인의 단절과 귀환에 따른 법제도적 과제와 개선방안

1. 혼인의 단절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이 한국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남편이 사망(실종)하는 경우나 이혼을 하는 경우,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은 아직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한국내 체류가 문제된다. 남편의 사망(실종)으로 혼인이 단절되는 경우 베트남결혼이주여성으로서는 자신의 책임이 없기 때문에 법률적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한편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한국민의 배우자’ 지위를 상실하게 되어 한국내 체류가 문제된다. ①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이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혼한 경우 ② 자신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지만 양육하여야 할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 ③ 자신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고 양육하여야 할 미성년 자녀도 없는 경우를 나누어 살펴본다.

2. 남편의 사망(실종)으로 인한 혼인의 단절과 간이귀화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이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남편의 사망이나 실종에 의해 혼인이 단절되면 ‘한국민의 배우자’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하지만 이 경우 2단계를 거쳐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1단계로,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한국민의 배우자(F-6-1)’ 지위에서 혼인단절자(F-6-3)의 지위로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체류기간은 1년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지만, 한국에 체류하면서 생활하는데 제한은 없다. 2단계는 혼인단절자로 생활하면서 한국 국적법 제6조 제2항에서 정해 놓은 간이귀화에 필요한 기간⁷⁰⁾을 채

69) 그러나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결혼사증(F-6) 발급에는 한국인 남편의 초청이 필요하고, 이 경우 한국인 남편은 출입국관리법 제90조 제1항에 따라 베트남 신부의 신원보증인이 된다. 신원보증기간은 최소 2년이며 최장 4년까지 허용된다.

70)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거나, 배우자와 혼인한 후 3

우고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인으로서 생활하게 된다.

3. 이혼과 간이귀화

1) 이혼현황

우리나라에서 외국인과의 이혼은, 2004년까지 외국남성과 한국여성 부부의 이혼이 주류였으나, 2005년부터는 한국남성과 결혼이주여성 부부의 이혼이 대세가 되었고 그 격차도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한국남성과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이혼이 꾸준히 늘고 있다. [표-2]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0년에는 전체 이혼건수 대비 19.8%, 2011년도 23.1%로 빠르게 이혼이 급증하고 있어 베트남결혼이주여성과의 혼인생활의 문제점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표-2]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이혼현황⁷¹⁾

(건수/ %)

년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 이혼수	1,567	2,382	3,933	5,609	7,901	8,246	7,852	8,349
베트남 여성과의 이혼	147 (9.4%)	289 (12.1%)	610 (15.5%)	895 (16%)	1,078 (13.6%)	1,292 (15.7%)	1,552 (19.8%)	1,931 (23.1%)

결혼생활의 평균기간은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⁷²⁾에 의하면 여성결혼이주자의 경우 이혼 전까지 평균 4.7년의 결혼생활을 하였으나,

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71) 출처 :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http://kosis.kr/gen_etl/start.jsp?orgId=101&tblId=DT_1B85021&conn_path=I3&path=NS
(2013. 4. 2. 검색)

7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정책보고서 2010-06), 2010.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경우는 2.8년으로 짧은 편이다.⁷³⁾ 또 이혼이나 별거의 이유로, 성격차이(28.4%), 경제적 무능력(19.7%), 학대와 폭력(13.7%), 외도(12.7%), 심각한 정신장애 및 기타(9.4%), 음주 및 도박(8.8%),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7.2%)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혼인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학대 및 폭력의 비율이 가장 높은 35.4%에 달하였다. 그런데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경우 23.8%가 학대와 폭력을 이혼과 별거의 이유로 들고 있어⁷⁴⁾ 남편과 시댁식구들로부터의 인권침해가 심각함을 짐작할 수 있다. 더욱이 남편으로부터 폭행 등을 당한 결혼이주여성이 폭행을 피하려 가출하였다 오히려 한국인 남편으로부터 가출을 원인으로 불법체류자가 되는 사례도 있다.⁷⁵⁾ 베트남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실태조사에서도⁷⁶⁾ 폭력과 학대는 가출의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에게 남편의 폭력을 피해 가출한다는 것은 곧 결혼이주자로서의 체류자격을 잃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주여성들은 ‘한국민의 배우자’로서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출한 순간부터 ‘이탈자’로 표현되며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제재의 대상이 된다.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출하는 경우 대다수의 한국남편과 남편의 가족들은 결혼이주여성을 ‘처벌’할 강력한 수단으로 가출신고를 한다. 가출한 결혼이주여성은 결혼을 지속할 의사가 없다고 간주되고, 남편은 이혼절차를 밟는다.⁷⁷⁾ 이렇게 남편에게 주어진 준사법적 권력은 결혼이주여성을 무력하게 만든다. 남편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영주권 신청이나 국적신청을 할 수 없고, 남편이 이혼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비자연장도 할 수 없다. 이처럼 결혼이주여성들에게 남편은 곧 ‘체류자격’이기 때문에 장기간 폭력을 견디는 여성도 많다.⁷⁸⁾ 남

73) 김현미, 앞의 “결혼이주여성들의 귀환결정과 귀환경험”, 122쪽.

74) Ibid., p. 122.

75) 안중화, “다문화가정 이혼사건의 특성, 법적·제도적 개선 및 지원방향.” 다문화가정의 이혼실태와 법적 과제 토론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11.6.21. 62쪽에 의하면, 이 경우 결혼이주여성은 남편의 폭행에 대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경찰에 신고하고, 격리 및 접근금지의 임시조치를 요청하여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아, 한국 남편을 현재의 주거지에서 축출함으로써 가출을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를 당할 위험도 줄어들게 된다.

76) 김현미, 앞의 “결혼이주여성들의 귀환결정과 귀환경험”, 124-127쪽.

77) Ibid, p. 124.

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가출하는 경우, 경찰, 가정폭력센터, 여성쉼터 등 공공적 기관을 활용함으로써, 향후 이혼에 있어 남편의 귀책사유 주장에 대한 반증의 증거자료를 축적하여 자신을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2) 이혼에 책임 없는 결혼이주여성의 간이귀화

결혼이주여성은 국민의 배우자의 자격인 거주비자(F-6-1)로 체류하나, 이혼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이 상실되어 출국 대상이 된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혼한 경우, 종래 ‘한국민의 배우자(F-6-1)로서의 체류자격을’ 혼인단절자에 대한 체류자격(F-6-3)’으로 변경신청을 한 후,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3호와 제4호에서 정한 잔여기간을 채우고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간이귀화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전제는 결혼이주여성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의 귀책사유 없이’에 대한 해석을, ‘국민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이혼을 한 자’로 새기고 있고,⁷⁹⁾ 실무에서도 국민인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명시되지 않은 문서는 입증자료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⁸⁰⁾ 그 결과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이혼을 원하면서도 남편의 귀책사유를 둘러싼 다툼 때문에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고, 귀책사유 여부에 대한 것을 정하지 않고 화해나 조정애 임하였다가 후에 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도 있다.⁸¹⁾

한국인들 사이의 이혼은 2012년 통계에 의하면 협의이혼 대 재판상이혼이 76%대 24%임에 비하여,⁸²⁾ 외국인아내의 한국남자에 대한 이혼에 있어 협의이혼은 35.6% 재판상이혼은 64.3%로 재판상이혼에 의존하는 비

78) Ibid, p. 127.

79) 김종철, “이혼한 결혼 이주 여성의 체류,” 『국제결혼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세미나』, 대한변호사협회·서울가정법원, 2011.7.7, 44쪽.

80) Ibid, p. 45.

81) 이현곤, “법정에서 바라본 다문화가정,” 『국제결혼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세미나』, 대한변호사협회·서울가정법원, 2011. 7. 7. 100쪽.

82) http://kosis.kr/gen_etl/start.jsp?orgId=101&tblId=DT_1B85019&conn_path=I2&path=연구·가 구 - 인구동향조사 - 이혼 - 이혼종류별 이혼 (2013. 4. 29. 검색)

율이 월등히 높다.⁸³⁾ 이러한 결과는 이미 예견된 일로,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이혼 후 국내체류를 위하여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명시된 판결문이⁸⁴⁾ 있어야 ‘혼인단절에 대한 체류자격(F-6-3)으로 체류하면서 간이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결혼이주여성이 협의이혼을 하게 되면 남편의 책임으로 이혼한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체류연장이나 국적신청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생각건대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3호의 ‘결혼이주여성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라는 규정을 한국인 남편의 귀책사유로 새기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2007년 법무부는 혼인해소의 귀책여부를 결정하는 데, 법원의 결정과 의사의 진단뿐 아니라 ‘공인된 여성단체의 확인’도 인정하기로 하였지만 여전히 이혼에 있어 귀책사유 입증은 어려운 작업이다. 이혼에 결혼이주여성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한국인 남편의 귀책사유 여부를 묻지 않고 간이귀화에 있어 기간 요건의 예외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⁸⁵⁾ 또 부부 중 일방의 불임이나 장애 등 일방의 귀책사유로 묻기 애매한 사유로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이혼의 합의는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간이귀화에 있어 기간 요건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3) 자녀양육을 위한 간이귀화

베트남결혼이주여성에게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한국인 남편과의 혼인 중 출생한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경우,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은 종래 ‘한국민의 배우자(F-6-1)로서의 체류자격을 ‘자녀 양육자에 대한 체류자격(F-6-2)으로 변경신청을 한 후,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잔여기간을 채우고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간이귀화를 할 수 있다.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의 혼인관계증명서와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한다는 사실증명 서류를 제출

83) http://kosis.kr/gen_etl/start.jsp?orgId=101&tblId=DT_1B85030&conn_path=I2&path=인구·가구 - 인구동향조사 - 이혼 - 외국인과의 이혼 (2013. 4. 29 검색)

84) 양현아, 앞의 “가족 안으로 들어온 한국의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실험,” 54쪽.

85) 김종철, 앞의 “이혼한 결혼 이주 여성의 체류,” 45쪽도 같은 견해이다.

하여 간이귀화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은 사회생활의 안정이 어렵고, 한국인 남편에 비해 경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녀양육을 원인으로 간이귀화를 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입장에서는 이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여성은 생활력이 강하기 때문에 자녀양육권을 가지는 것이 베트남에서의 일반적 경향이다. 오히려 남편의 자녀에 대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상이 있다고 한다.⁸⁶⁾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결혼이주여성이 이혼 후,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갖는 경우는 남편의 사망이나 가출 등으로 혼인이 단절됨으로서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필요불가결한 경우 이외에는 거의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자녀의 복리가 물질적 환경의 충족만으로 보장될 수 있는지 우리 법원의 심각한 숙고가 필요하다. 자칫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인 자녀를 생산·양육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국사회의 필요에 기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체류자격을 부여⁸⁷⁾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한편 미성숙 자녀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어머니를 면접할 수 있는 권리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법원의 전향적인 태도가 요구된다. 면접교섭권은 UN이 정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약상의 요구를 반영하여⁸⁸⁾ 2005년 민법을 개정하여 부모의 권리의무이자 자녀의 권리임을 확인하고 있다.

4) 이혼에 따른 사후정리 등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 남편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면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기타 가사정리 등을 위해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경우, 출입국관리소는 가사정리를 위하여 6개월 범위내에서 방문동거(F-1-6) 자격으로 최대 1년까지 한국 체류를 인정하나, 연장을 인정하지 않는다.⁸⁹⁾결혼이주

86) Do Ngoc Luyen, 앞의 "NGHIÊN CỨU NHÀ THỨ VÈ GIA ĐÌNH ĐA VĂN HÓA VIỆT NAM VÀ HÀN QUỐC -TÀ TRUNG NGHIÊN CỨU QUAN HÈ GIA ĐÌNH-(한국과 베트남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 연구-가족관계를 중심으로)-", 522쪽.

87) 김종철, 앞의 "이혼한 결혼 이주 여성의 체류," 43쪽 참조.

88) 신영호, 『가족법강의』, 세창출판사, 2010. 144쪽.

89)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외국인정책본부, 『사증발급안내 메뉴얼』, 2012. 10. 18쪽.

여성이 생존을 위한 불법취업 등으로 인권의 사각지대에 빠질 위험이 크다. 향후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혼의 책임유무를 떠나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노동할 수 있는 생존권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⁹⁰⁾

5) 소결

베트남이주여성의 이혼율이 다른 국가의 이주여성보다 월등히 높은 원인은, 속성결혼과 언어소통 능력 부족 그리고 상대방 문화에 대한 이해의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만한 결혼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베트남 내부에서 결혼숙려제도 도입, 언어구사능력 검정시스템 도입 등 혼인성립절차를 강화하자는 견해가 제시되었다.⁹¹⁾ 결혼숙려제의 도입을 모든 결혼에 일반화 하는 것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또 베트남정부와 국민은 어떠한 수단을 강구하더라도 혁명적으로 관리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한국과 대만에 시집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는⁹²⁾ 격한 논의도 있다. 그만큼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인권이 심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반동으로 보여진다. 베트남 결혼·가족법 제14조에 의한 결혼등록시 규정에 따른 집행을 엄격히 함으로서 속성결혼에 따른 부작용을 대폭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원만한 혼인생활을 위한 언어소통 능력 등을 결혼사증 발급심사에 반영함으로서 매매혼, 준비되지 않은 국제결혼을 사전에 저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여성부는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수수료 등 비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을 사왔다는 의식을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이렇게 베트남정부와의 긴밀한 협조에 의한 사전절차의 강화는 혼인생활에 있어 당사

90) 양현아, 앞의 “가족 안으로 들어온 한국의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실험,” 55쪽.

91) Tran Huu Yen Loan, 앞의 “NHỮNG VẤN ĐỀ CỦA PHỤ NỮ VIỆT NAM KẾ HÔN NHÀ CỬ TẠI HÀN QUỐC - VẤN ĐỀ TOÀN CẢ HÓA VĂN HÓA - XÃ HỘI(베트남 결혼이민자의 특성에 관한 연구-문화 및 사회적인 글로벌화에 관한 문제-)“, 551-552쪽.

92) Ha Minh Thanh, 앞의 「1992년 이후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국제결혼에 대한 연구-베트남 여성의 문화적 적응을 중심으로-」, 76쪽.

자의 고통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낮추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규제라 할 수 있다.

또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이혼시 이주여성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한국인 남편의 귀책사유 여부를 묻지 않고 간이귀화에 있어 기간 요건의 예외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⁹³⁾ 또 부부 중 일방의 불임이나 장애 등 일방의 귀책사유로 묻기 애매한 사유로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이혼의 합의는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간이귀화에 있어 기간 요건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베트남에서 이혼시 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어머니가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결혼이주여성이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갖는 경우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필요불가결한 경우 이외에는 거의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친권제도의 대폭 개편은 미성숙 자녀의 보호를 우선한다는 것이다. 법원의 전향적인 태도가 요구된다.

4. 결혼이주여성의 베트남으로의 귀환

1) 귀환의 의미

베트남이나 한국에서 이혼은 그렇게 큰 흠이 아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이혼 이후에 이루어지는 귀환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삶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좇아 국제결혼까지 했다가 빈손으로 귀환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실망과 냉소로 지역사회에서 소외될 수 있다. 베트남으로 귀환한 여성들의 고단한 삶은 계속되겠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잊혀진 존재가 된다. 베트남 여성의 귀환에 있어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매우 복잡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최근에 문제된 베트남여성이 남편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공동양육하는 자녀(생후 13개월)를 데리고 출국하여 베트남 친정에 자녀를 맡긴 행위에 대하여 미성년자약취죄 또는 국외이송약취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대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상태이다.⁹⁴⁾ 베트남여성들은 이혼

93) 김종철, 앞의 “이혼한 결혼 이주 여성의 체류,” 45쪽도 같은 견해이다.

94) <http://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currentPage=1&searchWord=&searchOption=&seqnum=78&gubun=702>, 대법원2010도14328 사건.

하는 경우 전통적으로 어머니가 자녀양육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판의 결과가 주시된다.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이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자녀양육권을 인정받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자녀양육권을 인정받아 베트남에서 양육하는 경우라도 그 자녀는 한국인이지만 ‘한국영토 밖의’ 존재로 한국사회와 국가의 보호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⁹⁵⁾ 귀환여성들의 현실적인 이러한 어려운 삶 이외에도, 한국남편과의 혼인이 법적으로 정리되지 못하는 경우, 법제도적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 2중의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 경우를 나누어 살펴본다.

2) 한국에서 이혼절차가 마무리 된 경우

한국에서 이혼절차가 마무리 되더라도 베트남에서 이혼절차가 마무리 되어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이 법률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다면 큰 문제가 없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⁹⁶⁾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이 이혼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조차 한국남편의 의지나 배려에 의하기 때문에 한국남편이 이혼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지 않아 베트남에서 정식으로 이혼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⁹⁷⁾ 따라서 대부분의 귀환여성들은 여전히 법적으로 한국인의 배우자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설사 이혼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었다 하더라도 한국어로 작성된 서류를 번역하는 등 비용도 귀환이주여성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한국남편이나 베트남귀환이주여성에게 호적정리를 맡겨 두기에는 사회·문화적 차이, 경제적인 문제 등 한계가 있다. 한국에서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이혼에 따르는 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입법적인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등록예규 등으로 베트남이주여성과의 이혼하는 경우, 따라야 할 준칙을 미리 정해 두어 법률적 마무리를 위한 서류 준비와 교부를 의무화하여야 할 것이다.

95) 김현미, 앞의 “결혼이주여성들의 귀환결정과 귀환경험”, 112쪽.

96) 앞의 II. 1. (3) 6)에 의하면,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61.9%가 중졸이하의 학력으로 법률적 소양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된다.

97) 김현미, 앞의 “결혼이주여성들의 귀환결정과 귀환경험”, 137쪽.

3) 한국에서 이혼처리가 완결되지 않은 경우

한국에서 이혼처리를 마무리 하지 않은 채 베트남으로 귀환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베트남 법률에 의존하여 이혼처리를 마무리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이 베트남에서 한국인 남편에 대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적용되는 법률은, 혼인생활의 주된 근거지 및 그 파탄원인의 발생지가 대한민국이므로 국제사법 제32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법률이 준거법이 될 것이다.

베트남으로 귀환한 이주여성이 베트남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서 다시 그 판결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한 베트남법원의 이혼판결은 한국에서 그 효력이 없다.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이 이혼을 하기 위하여 다시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법원에서 이혼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베트남법원에 재판상이혼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경우 베트남법원에 제출하여야 할 증거서류 등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기 어려워 실질적으로 베트남에서 이혼판결을 받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귀환이주여성의 재정착을 돕기 위한 양국 정부 차원 혹은 양국의 NGO에 의한 지원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

V. 마무리

한국사회도 빠르게 과거의 가부장제적 가족구조를 탈피하여 남녀평등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 등 일부 지역에는 아직 전통이라는 미명하에 가부장제적 문화를 답습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를 알지 못한 채 한국으로 시집 온 베트남결혼이주여성에게는 일상생활이 이해하기 힘든 상황의 연속일 것이다. 더욱이 불완전한 언어소통과 습속의 차이, 아직도 가정생활에 깊게 뿌리박혀 있는 가부장제적 가족제도, 고부간의 세대갈등은 결혼생활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 한국과 베트남 문화차이의 이해가 전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결혼은 시작부터 갈등을 내포하고 있다.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결혼은 거의 불법적인 국제결혼중개업체가 제공한 정보에 의존한다. 거기에 한류문화의 영향으로 한국남성의 외모 및 한국에 대한 막연한 동경만 가지고 경제적으로 발전한 한국에서 빨리 돈 벌어 친정식구들을 도울 생각에 속성으로 결혼을 한다. 한국에 입국하여 1년도 안되어 자신의 기대와 전혀 다른 현실을 발견하곤 많은 갈등을 하는 것이 현실이다. 베트남여성의 남편인 한국남자와 그 가족들 역시 국제결혼에 대한 준비 없이 거액의 돈을 들여 베트남여성을 사오는 것으로 인식하고,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을 자신들의 가정에 동화시키려 할 뿐, 자신의 아내이자 며느리를 이해하려는 노력에는 소홀하다. 한국남편이나 베트남부인이나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시작한 결혼은 이미 불행을 잉태하고 있는 셈이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과 베트남의 사회·문화적인 이해와 상호 의사의 소통이 전제되지 않는 결혼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 이혼한 후,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여 베트남으로 귀환하는 이주여성, 법적 조치를 완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이들의 베트남에서의 재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전통적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집착이 강한 베트남여성이 모성본능을 뒤로 한 채 어쩔 수 없이 베트남으로 귀환하는, 한국에 남겨둔 한국인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최소한의 윤리적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 방안으로 첫째, 혼인성립 절차를 강화한다. 베트남은 결혼·가족법 제14조에 의한 법집행을 엄격히 하고, 우리나라는 결혼사증 발급절차를 통하여 혼인의 진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국제결혼 당사자의 소양교육을 강화한다. 결혼이주를 희망하는 결혼당사자들이 각각 상대방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서로 상대국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한다. 국제결혼중개가 베트남에서 불법적임을 감안하여, 한국과 베트남의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베트남에서 결혼이주희망 여성에 대한 한국어교육과 한국의 문화를 교육시킨 후 한국남성들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향후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담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한국내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지불하게 될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베트남결혼이주여성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혼인이 단절되는 경우 간이귀화 요건을 완화하여야 한다. 남편의 사망이나 폭행을 피하기 위한 가출 등 이주여성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 이주여성에게 간이귀화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넷째, 이혼 후 베트남으로 귀환하는 여성들의 재정착에 장애가 되는 호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혼한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귀환에 따르는 법률적 미비는 이들의 베트남 재정착에 큰 방해가 된다. 경제력·법률적 능력의 부족으로 이혼에 따르는 호적정리하지 못한 경우, 베트남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정부도 적극적으로 이의 정리를 위해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최소한의 윤리적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우선 우리나라는 대법원 등록예규 제361호에 준한 ‘한국남성과 베트남여성의 이혼에 관한 절차’를 제정해 이혼에 필요한 서류의 상호교부를 제도화함으로써 스스로 호적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 사회에서 국제결혼은 전체 결혼의 9%대에 이르고 국제이혼도 전체 이혼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도 전체 국민의 1%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아졌다. 그만큼 우리나라도 이미 다른 사회의 문화와 의존하며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호 의존적인 세계화의 흐름 속에 더불어 생존하기 위하여 문화적 다양성의 이해는 필수불가결하다. 우리의 딸들이 다른 나라로 시집가던 시대에서, 외국여성들이 시집오는 한국의 국격에 걸맞게 법제도적인 시스템의 구비가 요구된다.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덕목의 함양은 교육이 가장 효과적이다. 특히 국제결혼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그리고 사회적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김두년 연구책임자, 신용복·이정환 공동연구자, 『국제결혼중개업 건전화 방안』, 여성가족부 연구, 용역보고서(연구보고 2010-49).
- 김연·박정기·김인유, 『국제사법』(제2판), 법문사, 2006.
- 김용한, 『친족상속법』(보정판), 박영사, 2004.
- 대한변호사협회, 『이주외국인을 위한 법률매뉴얼 I 개정판』, 2013.1.
- 박귀천·이유봉, 『출입국관리법과 국적법 개선에 관한 연구—외국인노동자, 이주여성 및 이주아동 문제를 중심으로—』(현안분석 2012-14), 한국법제연구원, 2012.12.31.
- 법무부, 『민법(재산편) 개정 자료집』, 2004.
- 보건복지부·법무부·여성부,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외, 2010.
- 석광현, 『2001년 개정 국제사법 해설』(제2판), 지산, 2003.
- 신영호, 『가족법강의』, 세창출판사, 2010.
- 신창섭, 『국제사법』, 세창출판사, 2007.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다문화가정의 이혼 실태와 법적 과제 토론회 자료집』, 2011.6.21.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2010.9.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정책보고서 2010-06), 2010.
- 한복룡, 『국제사법』, 충남대학교출판부, 2007.
- Ha Minh Thanh, 『1992년 이후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국제결혼에 대한 연구-베트남 여성의 문화적 적응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석사학위청구논문, 2008. 8.

2. 논문

- 권태연,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 실태에 관한 연구-중국, 베트남, 몽골출신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몽경상연구』(제22권 제2호), 2011. 8.

- 김민아,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2011년 정책방향,” 『다문화 가정의 이혼 실태와 법적 과제 토론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11.6.21.
- 김재련, “결혼중개업에 대한 검토 및 보완필요성에 대하여,” 『국제결혼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세미나』, 대한변호사협회·서울가정법원, 2011.7.7.
- _____,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여성의 지위,” 『가족법연구』 제22권 1호, 한국가족법학회, 2008.
- 김중철, “이혼한 결혼 이주 여성의 체류,” 『국제결혼관련 문제점 및 개선 방안세미나』, 대한변호사협회·서울가정법원, 2011.7.7.
- 김태자·권복순,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통과의례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43호), 2012. 12.
- 김현미, “결혼이주여성들의 귀환결정과 귀환경험”, 『젠더와 문화』(제5권 2호), 2012.
- 문홍안, “가족법상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가족법연구』 제21권 3호, 한국가족법학회, 2007.
- _____, “결혼이주여성의 보호를 위한 현행 법제의 비판적 검토”, 『가족법연구』 제27권 1호, 한국가족법학회, 2013. 3.
- 소라미, “결혼 이주여성의 인권실태와 한국 법제도 현황에 대한 검토,” 『법학논총』 제16권 제2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 송소영, “귀화와 영주자격의 연결방안에 관한 연구—영주권전치주의 도입과 관련하여—,” 『입법학연구』(Vol. 8), 한국입법학회, 2011.
- 신유경·장진경, “문화상호주의적 관점에서 본 베트남 다문화가족의 가족 생활적응 사례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제14권 3호), 2010. 8.
- 안중화, “다문화가정 이혼사건의 특성, 법적·제도적 개선 및 지원방향,” 『다문화가정의 이혼실태와 법적 과제 토론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11.6.21.
- 양현아, “가족 안으로 들어온 한국의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실험,” 『사회 통합과 법의 역할』(제8회 한국법률가대회), 한국법학원, 2012.10.22.
- 윤태순 “중·한 국제결혼의 증가에 따른 가족법의 문제,” 『가족법연구』 제22권 1호, 한국가족법학회, 2008.
- 은기수, “한국과 베트남의 자녀 성 선호 비교”, 『한국-베트남 문화공통점

- 과 차이점 및 한-베 협력에 미치는 영향」, 호치민국립인문사회과학대학교, 2013. 4. 23.
- 이병준, “민법상 전형계약으로서의 중개계약과 중개인의 책임,” 『법학연구』 제42권 제1호(통권50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12.
- 이승우, “혼인이주여성의 지위와 법적 문제,” 『서울법학』 제16권 제1호, 서울시립대학교, 2008.
- _____, “다문화 가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제 소고,” 『가족법연구』 제23권 3호, 한국가족법학회.
- 이현곤, “법정에서 바라본 다문화가정,” 『국제결혼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세미나』, 대한변호사협회·서울가정법원, 2011.7.7.
- 임영수, “혼인이주자의 보호법제에 관한 고찰-해석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동아법학』 제58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2.
- 전경운, “혼인중개계약의 법적 성질과 소비자보호방안,” 『민사법학』 제32권, 한국민사법학회, 2006.
- _____, “스위스채무법상 혼인중개나 파트너관계 중개위임,” 『비교사법』 제12권 제3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5.
- 전연숙, “국제가사소송사건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서울가정법원 가사 5단독 실무례를 중심으로—,” 『국제사법연구』 제12호, 한국국제사법학회, 2006.
- 정상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법체계 개선방안 연구,” 『법학논총』 제26집 제1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 정혜영·김진우, “베트남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의 문화적응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 연구,” 『한국사회복지학』(제62권 2호), 2010. 5.
- 천승우, “다문화가정 이혼 실태와 법적 해결방안 토론편,” 『다문화가정 이혼 실태와 법적 해결방안 토론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11.6.21.
- 최봉경, “국제이주여성의 법적 문제에 관한 소고,” 『서울대학교 법학』 제51권 제2호, 2010. 6.
- 최신섭, “혼인중매계약과 보수반환청구(독일민법 제656조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1집,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1999.12.
- 최현태, “국제결혼중개계약 관련 법률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법과 정책』 제11집 제1호(통권 제21호), 한국법정책학회, 2011.3.

한국염, “수령과도 같은 국제결혼중개업문제, 해결책은 없는가?” 『국제결혼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세미나』, 대한변호사협회·서울가정법원, 2011.7.7.

한숙희, “국제혼인의 파탄사유에 관한 실증적 고찰,” 『가족법연구』 제24권 1호, 한국가족법학회, 2010.

Do Ngoc Luyen, "NGHIÊN CỨU NHẬP THỰC VỆ GIA ĐÌNH ĐA VĂN HÓA VIỆT NAM VÀ HÀN QUỐC -TẠI TRUNG NGHIÊN CỨU QUAN HỆ GIA ĐÌNH-(한국과 베트남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 연구-가족관계를 중심으로-)“, 『한국-베트남 문화공동점과 차이점 및 한-베 협력에 미치는 영향』, 호치민국립인문사회과학대학교, 2013. 4. 23.

Nguyen Ngoc Tho, "CHŨ HIỆ VÀ ĐẠ TRUNG XÃ HỘ QUA HAI NÈ VĂN HOÁ(두 문화를 통해 보는 효와 사회적 특징)“, 『한국-베트남 문화공동점과 차이점 및 한-베 협력에 미치는 영향』, 호치민국립인문사회과학대학교, 2013. 4. 23.

Tran Huu Yen Loan, "NHỮNG VÁ ĐỀ CỬ PHỤ NỮ VIỆT NAM KẾ HÔN NHẬP CỬ TẠI HÀN QUỐC - VÁ ĐỀ CỬ TOÀN CẢ HÓA VĂN HÓA - XÃ HỘ(베트남 결혼이민자의 특성에 관한 연구-문화 및 사회적인 글로벌화에 관한 문제-)“, 『한국-베트남 문화공동점과 차이점 및 한-베 협력에 미치는 영향』, 호치민국립인문사회과학대학교, 2013. 4. 23.

3. web site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11&dirId=111002&docId=59846074&qb=7JuU64Ko7KCE7JeQIO2VnOq1reydgCDslrjsJwg7YyM67OR65CY7JeI64KY7JqU&enc=utf8§ion=kin&rank=2&search_sort=0&spq=0&pid=RSIFAU5Y7uossbdthCGsssstN-130619&sid=UVgniXJvLCoAAGQBQPI (2013. 3. 31. 검색)

<http://www.mopas.go.kr/gpms/ns/mogaha/user/userlayout/bulletin/userBtView.action?userBtBean.bbsSeq=1021046&userBtBean.ctxCd=1291&userBtBean.ctxType=21010002¤tPage=51>(2013. 3. 31. 검색)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

id=0006050171(2013. 4. 1 검색)

http://www.immigration.go.kr/HP/TIMM/imm_06/imm_2011_12.jsp(2013. 4. 3. 검색)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

id=0005793017(2013. 4. 1. 검색)

<http://vnm-hanoi.mofat.go.kr/kor/as/vnm-hanoi/consul/notice/index.jsp>

http://www.kmma.or.kr/designer/skin/sub_07/02.asp(2013. 4. 3 검색)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0937&lsId=008494&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0000>

http://kosis.kr/gen_etl/start.jsp?orgId=101&tblId=DT_1B85021&conn_path=I3&path=NS (2013. 4. 2. 검색)

http://kosis.kr/gen_etl/start.jsp?orgId=101&tblId=DT_1B85030&conn_path=I3&path=NS(2013. 4. 2. 검색)

http://kosis.kr/gen_etl/start.jsp?orgId=110&tblId=TX_11025_A010&conn_path=I3&path=NSI (2013. 4. 3. 검색)

http://kosis.kr/gen_etl/start.jsp?orgId=110&tblId=TX_11025_A022&conn_path=I3&path=NSI (2013. 4. 3. 검색)

http://kosis.kr/gen_etl/start.jsp?orgId=101&tblId=DT_1B85019&conn_path=I2&path=NSI (2013. 4. 29. 검색)

http://kosis.kr/gen_etl/start.jsp?orgId=101&tblId=DT_1B85030&conn_path=I2&path=NSI (2013. 4. 29 검색)

<국문초록>

이 논문에서는 한국과 베트남의 사회·문화적인 이해와 상호 의사의 소통이 전제되지 않는 결혼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 이혼한 후,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여 베트남으로 귀환하는 이주여성, 법적 조치를 완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이들의 베트남에서의 재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전통적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집착이 강한 베트남여성이 모성본능을 뒤로 한 채 어쩔 수 없이 베트남으로 귀환하는, 한국에 남겨둔 한국인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최소한의 윤리적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 방안으로 첫째, 혼인성립 절차를 강화한다. 베트남은 결혼·가족법 제14조에 의한 법집행을 엄격히 하고, 우리나라는 결혼사증 발급절차를 통하여 혼인의 진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국제결혼 당사자의 소양교육을 강화한다. 결혼이주를 희망하는 결혼당사자들이 각각 상대방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서로 상대국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한다. 국제결혼중개가 베트남에서 불법적임을 감안하여, 한국과 베트남의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베트남에서 결혼이주희망 여성에 대한 한국어교육과 한국의 문화를 교육시킨 후 한국남성들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향후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담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한국내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지불하게 될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베트남결혼이주여성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혼인이 단절되는 경우 간이귀화 요건을 완화하여야 한다. 남편의 사망이나 폭행을 피하기 위한 가출 등 이주여성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 이주여성에게 간이귀화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넷째, 이혼 후 베트남으로 귀환하는 여성들의 재정착에 장애가 되는 호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혼한 베트남결혼이주

여성의 귀환에 따르는 법률적 미비는 이들의 베트남 재정착에 큰 방해가 된다. 경제력·법률적 능력의 부족으로 이혼에 따르는 호적정리 하지 못한 경우, 베트남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정부도 적극적으로 이의 정리를 위해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최소한의 윤리적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우선 우리나라는 대법원 등록예규 제361호에 준한 ‘한국남성과 베트남여성의 이혼에 관한 절차’를 제정해 이혼에 필요한 서류의 상호교부를 제도화함으로써 스스로 호적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주제어 : 베트남결혼이주여성, 국제이혼, 국제결혼, 결혼중개업법, 이혼, 국적법, 결혼이주여성

Features of International Marriage of Vietnamese Immigrant Women and Plans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Moon, Heung-Ahn*

Ever since Korea and Vietnam re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the two countries' bond has become stronger than ever, augmenting the range of exchange between them in almost every possible field including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at such a high speed. Among many, an increase in number of Vietnamese immigrant women in international marriage is worthy of close attention. Since 2010, Vietnamese has topped the proportion of total foreign women married to Korean men, having surpassed Chinese.

Nonetheless, the quick international marriage between Korean men and Vietnamese women, which usually happens without sufficient time to get to know about different cultures and languages, has not only raised problems for people concerned, but numerous social issues as well. Recognizing these problems, a number of government departments have provided various support on policies and legal issues to protect multicultural families as a means of social integration and settlement support. Nevertheless, the support policies until now have been generalizing all of the immigrant women in international marriage as people subject to protection. Thus, considering every immigrant women as people in need, and trying to help them with various social issues have caused the government a high cost and low efficiency.

This thesis emphasizes the point that through the cases of Vietnamese immigrant women in international marriage, there should be a specific support plan for specific people in need, reflecting various traits of different cultures and societies, in order to ease their settlement in Korea. Moreover, it suggests detailed plans for improvements on legal and institutional problems. Although the Vietnamese government forbids commercial agents for international marriage, many of agencies are still active and to help the immigrant women, who desire

* Prof. Dr. College of Law, Konkuk University

to return and resettle in Vietnam in case of divorce, this thesis suggests legal and institutional remedies for Korean and Vietnamese government.

The composition of the thesis follows below: Part II on social and cultural traits of international marriage between Korean men and Vietnamese women. Part III on institutional problems and plans for improvements regarding settlement of immigrant women in international marriage. Part IV on legal and institutional problems and plans for improvements regarding divorced immigrant women and their return to Vietnam. Part V on conclusion.

Divorce is not a flaw anymore nowadays, but in case of Vietnamese immigrant women in international marriage, an inadequate legal system hampers their resettlement process. Cases of not being able to remove their own names from the family register due to poor financial and legal abilities are often identified and it is both the Vietnamese and Korean governments' duty to acquit their ethical responsibilities by seeking ways to institutionally and financially support them.

Key Words : Vietnam Immigrant Women, Breakoff of International marriage, International marriage, Marriage Brokers Business Management Act, Divorce, Nationality Act, Foreign Immigrant Women

